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및
기초과학연구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등〉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91호)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70호)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86호)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76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27호)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35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45호)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64호)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72호)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0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개요

【조인철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재옥의원안】

1. 제안 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최수진의원안】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황정아(I)의원안】

1. 제안 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김예지의원안】

1. 제안 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용혜인의원안】

1. 제안 경위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이병진의원안】

1. 제안 경위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황정아(Ⅱ)의원안】

1. 제안 경위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

【송재봉의원안】

1. 제안 경위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

【황정아(Ⅲ)의원안】

1. 제안 경위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

II. 검토의견

1. 농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13
(1)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이병진의원안 제6조제4항)	14
(2)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이병진의원안 제10조제2항)	18
(3)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이병진의원안 제16조제1항)	21
(4)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이병진의원안 제35조의2)	25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김예지의원안 제17조의3)	29
3.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조인철의원안 제19조)	36
4.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신설	36
(1) 협동조합 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용혜인의원안 제22조의5 신설)	42
(2)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취득 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용혜인의원안 제57조의2제11항 신설)	52
5.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최수진의원안 제31조의6)	57

6.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황정아 I 의원안 제33조제2항)	64
7. 기초과학 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황정아Ⅲ의원안 제45조의2) 68	
8.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 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황정아Ⅱ의원안 제46조)	75
9.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신설(윤재옥의원안 제70조의2)	81
10. 첨단산업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 재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송재봉의원안 제116조의2 신설)	92

I. 개요

【조인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3.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윤재옥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6.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매표수익 감소와 지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폐업은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최수진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13.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병행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황정아(I)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17.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김예지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용혜인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군인·경찰·교직원공제회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조합원 권익 향상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타 법인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와 제105조의2에 따르면 ‘조직변경 전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이에 협동조합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협동조합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2조의5 신설).
-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57조의2제11항 신설).

【이병진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이병진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황정아(Ⅱ)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송재봉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황정아(Ⅲ)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Ⅲ. 검토의견

1. 농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이병진의원안)

개정안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 농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에 따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35조의2).

참고로 2024.12.31.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35조의2의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

(이병진의원안 제6조제4항)

[illegible]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4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병진의원안
귀농인 취득세 감면 (§6④)	감면대상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현행과 같음)
	감면대상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 농지, 임야 등	
	감면내용	취득세 50%	
	일몰기한	<u>~2027년</u>	<u>~2029년</u>

취득세 감면을 통해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귀농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12,570명에서 2021년 14,461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2,660명, 2023년 10,54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귀농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4개년 귀농인 현황>

(단위: 가구, 명, 세)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귀농가구원 수	17,447	19,776	16,906	13,680
귀농인 수	12,570	14,461	12,660	10,540
동반가구원 수	4,877	5,315	4,246	3,140
귀농가구 수	12,489	14,347	12,411	10,307
평균 가구원 수	1.40	1.38	1.36	1.33
귀농인 평균연령	55.3	55.8	56.4	56.2

※ 자료: 통계청, 2021년·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보도자료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6억 7,000만원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6조제4항)>

(단위: 건,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취득세	감면건수	2,119	1,972	2,137	2,002	1,478	1,942
	감면금액	2,646,464	2,600,452	2,942,254	2,995,085	2,203,304	2,677,51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작성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병진의원안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2029년간 총 144억원(연평균 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²⁾.

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2)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 (이병진의원안 제10조제2항)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일부 및 종업원분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병진의원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생략) ³⁾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029년 12월 31일-----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4)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병진의원안
영농 등 직접사용 사업소 감면 (§10②)	감면 대상자	농어업인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영농, 영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감면 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일몰 기한	<u>~2027년</u>	<u>~2029년</u>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여건 악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영농, 영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감면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의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4억 5,000만원임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현황(제10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5,005	2,351,440
2022	5,923	2,841,278
2023	3,341	2,160,38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병진의원안에 따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323.5억원(연평균 6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⁵⁾.

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이병진의원안 제16조제1항)

[illegible]

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생략)	----- 2029년 12월 31일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6)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280만원 한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병진의원안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16①)	감면 대상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감면 내용	취득세 면제(280만원 한도)	
	일몰 기한	<u>~2027년</u>	<u>~2029년</u>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 증가에 따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개량을 통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농·어촌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의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50억 8,000만원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16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339	5,850,757
2022	2,724	5,105,860
2023	2,199	4,305,00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병진의원안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3억원(연평균 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⁷⁾

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4)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이병진의원안 제35조의2)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⁸⁾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의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병진의원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 ----- ----- 2029년 12월 31일 ----- -----.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지방세법」 제4조제1항9)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함)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액을 면제하고,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병진의원안
농지연금 담보 농지 (§35의2)	감면 대상자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감면 내용	재산세 100%*	
	일몰 기한	~2027년	~2029년

* 1)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100% 감면

2)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공제

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23년 농가고령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어 농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¹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어 고령층 농민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생계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신청 및 지원할 수 있는 지원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¹¹⁾ 등을 감안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의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 따른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4억 7,000만원임.

10)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농가 52.6%, 임가 52.8%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황(제35조의2)>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0,590	1,295,876
2022	11,763	1,511,468
2023	13,616	1,618,345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병진의원안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9억원(연평균 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¹²⁾

1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김예지의원안 제17조의3 신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¹³⁾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예비인증을 받은 신축·증축·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 행	김예지의원안
<신 설>	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예비인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

	<u>한 경우</u> 2. <u>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u> ③ <u>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u> ④ <u>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이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에 대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¹⁴⁾ 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¹⁵⁾.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 (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유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이른바 BF(Barrier Free)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¹⁶⁾.

개정안은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한 건축물로서 BF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5~15% 경감하고, BF인증을 받은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한차례에 한해 5년간 재산세를 3~15%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임.

또한, 예비인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

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내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재산세의 경우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예지의원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감면 (\$70의2 신설)	감면 대상자	<신 설>	대상시설의 시설주
	감면 대상		신축 등을 하는 건축물로서 BF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감면 내용		① 취득세 5%~15% ② 재산세 3%~15%
	추징 규정		① 예비인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인정 신청 가능일 1년 이내 인증을 못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 취소된 경우 ②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일몰 기한		~2030년

개정안을 통해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건축주들이 BF인증을 받는 것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BF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감면만이 고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감면특례의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

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대상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BF인증의 인증심사 수수료가 예비인증의 경우 100만원~400만원, 본인증의 경우 200만원~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¹⁷⁾, 이러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¹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감면 혜택은 민간 시설주체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주체가 공공인 대상 건물 9,891개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5.3%, 시설주체가 민간인 대상 건물 181,100개의 설치율은 89.5%으로 조사됨.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 참조

18)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결과: 시설주체별 현황>

(단위: 개, %, %p)

시설주체	대상건물	기준항목	설치	설치율	적정설치	적정설치율
공공	9,891	594,430	506,879	85.3%	436,863	73.5%
민간	181,100	5,845,983	5,237,017	89.6%	4,662,387	79.8%
합계	190,991	6,440,413	5,743,896	89.2%	5,099,250	79.2%

※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감면비율을 알 수 없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보유 건수 및 건축물 가액(공시가격) 등의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¹⁹⁾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BF인증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원의 다양한 지원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BF인증 민간 건물의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시공 등의 비용보다 지방세 감면액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12. 26.)

3.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조인철의원안 제19조)

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하 “유치원등”이라 함)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위탁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와 유치원등, 직장어린이집 등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안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4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 ----- ----- ----- ----- - <u>2034년 12월 31일</u> ----- ----- ----- ----- ----- ----- ----- <u>2034년 12월 31일</u> -----.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② ----- -----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u>2034년 12월 31일</u>-----. 1. 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²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음. 또한, 유치원등, 직장어린이집 등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²¹⁾ 포함)를 면제하는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

20)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

월 31일로 규정하였음.

2024.12.31. 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년까지로 연장하면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모든 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하였는데, 개정안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조인철의원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감면 (§19)	감면 대상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감면 내용	취득세 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00%	
	일몰 기한	~2027년	~2034년
직장 어린이집 감면 (§19)	감면 대상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
	감면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가 위탁운영 하는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위탁운영 하는 직장어린이집
	감면 내용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취득세 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00%
	일몰 기한	~2027년	~2034년

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최근 출생률 저하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수, 유치원 및 원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일몰기간 연장하여 유치원등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향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20년~2023년)>

(단위: 개,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수	합계	35,352	33,246	30,923	28,954
	전년대비 증감률	△5.4	△6.0	△7.5	△6.4
	국공립	4,598	5,437	5,801	6,187
	사회복지법인	1,316	1,285개	1,254	1,206
	법인단체 등	671	640개	610	551
	민간	11,510	10,603개	9,726	8,886
	가정	15,529	13,891개	12,109	10,692
	협동	152	142개	132	124
	직장	1,216	1,248개	1,291	1,308
보육아동 수	합계	1,244,396	1,184,716	1,095,450	1,011,813
	전년대비 증감률	△8.8	△4.8	△8.1	△7.6

※ 자료: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유치원 시설 및 원아 현황(2020년 ~ 2023년)>

(단위: 개,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치원 수	합계	8,705	8,660	8,562	8,441
	전년대비 증감률	△1.5	△0.5	△1.1	△6.2
	국립	3	3	3	3
	공립	4,973	5,058	5,113	5,130
	사립	3,729	3,599	3,446	3,308
원아 수	합계	612,538	582,572	552,812	521,794
	전년대비 증감률	△3.4	△4.9	△5.1	△5.6

※ 자료: 통계청, 유치원 개황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85억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약 315억원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제19조제1항·제2항)>

(단위: 건,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취득세	감면 건수	668	628	538	297	225	471
	감면 금액	9,967,005	10,986,031	9,502,783	6,974,448	5,301,401	8,546,334
재산세	감면 건수	45,648	42,881	40,563	37,608	34,613	40,263
	감면 금액	31,158,412	31,040,288	32,444,802	33,770,173	29,049,309	31,492,597

※ 자료 :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인철의원안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3,673억원(연평균 36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²²⁾.

2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2. 12.)

4.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용혜인의원안 제22조의5 신설 등)

(1) 협동조합 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용혜인의원안 제22조의5 신설)

개정안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현행	용혜인의원안
<신설>	제22조의5(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11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u>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u> 2. <u>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3.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 및 제57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임²³⁾.

2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이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의미함.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

구분	내용
협동조합	<u>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u>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u>협동조합의 연합회</u>
사회적협동조합	<u>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목적 협동조합</u>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u>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u>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동 법 및 타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개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면제하고,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감면특례를 신설하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용혜인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용혜인의원안
협동조합등 감면 신설 (\$22의5 신설)	감면 대상자	<신 설>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감면 대상		협동조합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면제
	추징 규정		①취득일 3년 이내 협동조합 인가 취소 ②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미사용 ③해당사유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일몰 기한		~2026년

협동조합의 사업 중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²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면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4)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참고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등²⁵⁾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에 대한 감면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²⁶⁾에 해당하므로 영리법인에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복지의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2021. 12. 28.>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6)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상법」

대해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적용 법률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 관련 규정	「민법」 상 법인 규정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 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의무사항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설립	19,649개	4,116개
운영	8,362개	2,566개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2편 상행위 및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성격의 조합임.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이를 고려하여 모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신설하기보다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 내용, 수행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²⁷⁾.

또한, 협동조합이 창업중소기업²⁸⁾, 사회적기업²⁹⁾ 등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2년까지 일반협동조합은 19,649개, 사회적 협동조합은 4,116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93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34개가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43.3%), 지역사회 공헌(25.5%), 일자리 창출(21.5%)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됨.

27) 참고로, 국책연구기관의 2016년 연구보고서에는 감면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타당하지 않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분석을 제시한 사례가 있음.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영세성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책임 박지현), “협동조합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2016)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9)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협동조합 설립현황(2022년 기준)>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계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조합수(개)	23,892	19,649	14,403	3,978	690	578	4,116	93	34
비중(%)	100.0	82.2 (100.0)	60.3 (73.3)	16.6 (20.2)	2.9 (3.5)	2.4 (2.9)	17.2	0.4	0.1

<설립목적별 협동조합 현황>

설립목적	조합원 소득증대	지역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합리적 경제소비	조합원 복지증진	경쟁력 제고	조합원 친목	기부 자원봉사	정부지원	공적자원 획득기회
비중(%)	33.3	25.5	21.7	5.4	4.8	4.3	1.7	1.3	1.3	0.6

※ 자료: 기획재정부,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024. 5. 17.)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협동조합의 경우 영리추구 여부, 지역별 분포, 자산보유 현황 등에서 차이가 있어 법정 감면 신설보다는 조례 지원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일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기 시행 중이라는 점³⁰⁾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0)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4년 12월 기준 경기도, 광주광역시, 창원시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도, 지방채정 등 영향을 고려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시행중임

참고 1

(일반) 협동조합 사례 : 협동조합 농부장터

- (개요) 협동조합 농부장터(이하 ‘농부장터’)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설립된 다중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조합임
- (주요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등 로컬푸드 공급, 농업지속성 강화 사업, 미래세대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돌봄사업 등을 주로 운영
 - (로컬푸드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농부장터), 로컬푸드 식당(그린테라스, 두레비앙), 온라인몰 운영 등을 통해 대구·경북 농산물 판매
 - 직매장은 연간 약 21만명(‘21년 기준)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매장 농산물 매출의 약 77%는 지역농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로컬푸드 식당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한식뷔페,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은 매일 약 350여명 이용 중
 - (농업 지속성 강화)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 체계 개선, 생산자 교육과 홍보 지원 등
 - * 유통과정의 중간비용을 최소화하여 판매가 80~85%는 생산농가 소득으로 보장
 - (미래세대 교육) 어린이, 학생, 소비자 등 대상으로 환경 및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먹거리 돌봄)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한부모가족, 지역아동센터 등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 로컬푸드 지원
- (주요성과) 조합원 230명, 출자금 2억 4천만원, 매출 41억원(‘23년 기준)
 - 생산자 조합원 75명, 소비자 조합원 134명, 직원 조합원 21명으로 구성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지역 구심점으로 로컬푸드 확산과 도농상생 등 협동조합을 통한 올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 지원
 - 개별조합 한계 극복과 도농·지역간 협업 모색을 위해 설립된 ‘대구경북로컬푸드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사로 활동
 - * 수급불균형 농산물을 회원사간 상호보완하는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공동마케팅 및 공동생산, 생산자 정보 통합관리와 공동교육 시행 등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참고 2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개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하 ‘도우누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돌봄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음
- (주요사업) 재가·이용시설·생활시설 서비스 등 돌봄사업을 주로 운영
 - * '22년 6월 기준 직영사업장 9개 및 위탁사업장 4개(요양원 2개, 어린이집 2개) 운영
 - (재가 서비스)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임
 - 11,000여 명의 노인·장애인 대상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1,000여 명의 산모·신생아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1년 기준)
 - (이용시설 서비스) 조합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심리발달지원센터, 케어센터 등 시설방문 대상자에게 제공
 - 1,500여 명의 아동에게 인지치료, 1,200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600여 명의 노인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21년 기준)
 - (생활시설 서비스) 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요양원을 통해 노인에게 제공되며, 5,400여명의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21년 기준)
- (주요성과) 조합원 924명, 출자금 2억 5천만원, 매출 320억원('23년 기준)
 - 조합원 중 직원 조합원이 617명, 후원자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
 - 임원(16명) 중 직원이 11명으로 직원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유사직종 종사자 대비 높은 임금을 지급
 - (종사자 권익향상)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민주적 조직 운영으로 직원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및 권익 증진이라는 선도적인 돌봄 제공 모델을 제시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용혜인의원안 제57조의2제11항 신설)

개정안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직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등기와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1항 신설).

현행	용혜인의원안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⑩ (생략) <u><신설></u>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또는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 조직변경한 협동조합등이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직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등기와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 및 제57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됨.³¹⁾

또한, 법인등,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됨³²⁾.

31)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3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 >

조직변경대상법인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 등
법인등	→	협동조합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등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는 기업합병·분할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제7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³³⁾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³⁴⁾.

개정안은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설립등기 및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용혜인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용혜인의원안
협동조합등 조직변경시 감면 (§57의2⑪ 신설)	감면 대상자	<신 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감면 대상		① 조직변경으로 양수받은 재산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양수 받아 3년이내 등기하는 재산
	감면 내용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이는 영리법인 등이 협동조합등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 보다 공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등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타 법인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110건이며, 그 중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84건임.

다만, 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은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공공기관이 「상법」 상 법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 또는 단체가 「상법」에 따라 조

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지 않다는 점³⁵⁾을 고려하면, 해당 감면 특례 신설 여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진흥함에 따라 추구되는 공익, 타 법인 또는 단체와의 조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법 문언에 따르면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나, 법인등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³⁶⁾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유의사에 따른 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5)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음

36)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한정되므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음.

5.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수진의원안 제31조의6)

개정안은 내국인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비수도권 내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추가로 25%를 경감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현행	최수진의원안
<신설>	제31조의6(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의 '24년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말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5만호 수준으로 2021년 대비 약 3만호 증가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약 77.7%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또한 2024년 전년대비 약 7,000호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79.4%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24.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구 분	2020.12.	2021.12	2022.12	2023.12	2024.10.	2024.11.
전 국	19,005	17,710	68,148	62,489	65,836	65,146
수도권	2,131	1,509	11,076	10,031	13,948	14,494
비수도권	16,874	16,201	57,072	52,458	51,888	50,652

※ 자료 : 국토교통부 2024. 12. 31. 보도자료, “24년 11월 주택 통계”

〈'24. 11월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

구 분	2020.12.	2021.12	2022.12	2023.12	2024.10.	2024.11.
전 국	12,006	7,449	7,518	10,857	18,307	18,644
수도권	1,245	601	1,292	2,167	3,843	3,842
비수도권	10,761	6,848	6,226	8,690	14,464	14,802

※ 자료 : 국토교통부 2024. 12. 31. 보도자료, “24년 11월 주택 통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급측면 세제지원으로,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준공하였으나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미만인 미분양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³⁷⁾.

또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수요측면 세제지원으로, 개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³⁸⁾.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8)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개정안은 내국인이 「주택법」 39)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비수도권 내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경감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법과 비교하여 적용대상에 비아파트를 추가되고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까지 확대됨.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3.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9)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2. (생략)

<최수진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33의3)	최수진의원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감면 (§31의6 신설)	감면 대상자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	미분양 주택 취득 내국인
	감면 대상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비수도권, 9억원 이하)**
	감면 내용	취득세 최대 50% (법 25% + 조례 25%)	(현행과 같음)
	일몰 기한	~2025년	~2029년

* 타인에게 2년 이상 임대한 경우(2025.12.31. 까지 계약 체결) 限

** 주택공급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限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과거 금융위기 시절 미분양주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3회 신설된 바 있음.

<과거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사례>

구분	감면기간	적용 권역	취득세율	감면비율	적용세율
1차	2008.6.11~2009.6.30	지방	4% (현재: 1%)	취·등록세 75%	1% (현재와 동일)
2차	2009.7.1~2010.6.30	전국		취·등록세 75%	
3차	2010.7.1~2011.4.30	지방		85㎡ 이하 75% 85㎡초과 50~75%	

다만,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에 대하여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⁴⁰⁾ 과거 취득세율 감면 특례를 도입했던 시기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정책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이 반복됨에 따라 건설사 및 부동산 PF가 정부가 세제혜택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여 기업의 자기 책임의식이 약화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0)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text{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text{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times \frac{\text{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text{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left(\frac{\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text{취득당시가액}} \times \frac{2}{3\text{억원}} - 3 \right) \times \frac{1}{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지방세 지원은 부동산 시장 동향, 기 추진 중인 정책의 효과성, 국세 지원과의 연계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주택협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양도세 감면 등 거래세 지원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유도하여 수도권 중심 '똥똥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약화시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미분양 주택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워 세제 지원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개정안은 상시 거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 64 –

현행법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서민주택의 요건을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음⁴¹⁾.

개정안은 해당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일정 규모 및 금액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황정아 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황정아 I 의원안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33②)	감면 대상자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서민주택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m ² 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주택)	
	감면 내용	취득세 100% 감면	
	일몰 기한	~2027년	~2029년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가구 2,177.4만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4.5만 가구로 전년대비 1.8% 증가했고, 무주택 가구는 961.8만 가구로 조사됨. 2016년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소유율은 56% 수준인데, 무주택가구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무주택가구수의 증가세를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감면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⁴²⁾.

<주택소유가구 현황>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택소유가구	10,743	11,000	11,234	11,456
일반가구	19,368	19,674	19,979	20,343
무주택가구	8,624	8,674	8,745	8,887
주택소유율	55.5	55.9	56.2	56.3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택소유가구	11,730	12,063	12,232	12,245
일반가구	20,927	21,448	21,774	22,073
무주택가구	9,197	9,386	9,541	9,618
주택소유율	56.1	56.2	56.2	56.4

※ 자료 : 2023년 주택소유 통계(통계청) , 2016~2022 주택소유 통계관련 통계청 보도자료 등 참조

주1)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주2) 가구 주택소유율 : 전체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42) 다만, 2007년에 설정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는 서민주택 기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바, 해당 기준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은 해당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법상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1억 6천만원임.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제33조제2항)>

(단위: 건,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평균
취득세	감면 건수	4,908	5,016	3,310	2,000	1,342	3,315
	감면 금액	3,329,185	3,285,732	2,044,572	1,282,444	871,083	2,162,603

※ 자료 :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황정아 I 의원안에 따라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2029년간 총 25.2억원(연평균 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⁴³⁾.

4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2. 31.)

7. 기초과학 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황정아Ⅲ의원안 제45조의2)

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현행 감면 수준을 상향조정하면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45조의2).

현행	황정아Ⅲ의원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u>100분의 50</u> 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u>100분의 50</u> 을 각각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 ----- ----- <u>100분의 60</u> ----- ----- ----- <u>100분의 60</u> ----- <u>2031년 12월 31일</u>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 ~ 6. (현행과 같음)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	

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4)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 45)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6)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그

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4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R&D)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세제 차원의 지원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현행법 제45조⁴⁷⁾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았던 과학기술단체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32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 계획을 감안하여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⁴⁸⁾.

이후 기초과학분야 이외에 경제·인문사회, 국방·해양과학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감면대상 기관을 확대하면서, 감면액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율을 하향조정(100%→50%) 하였음⁴⁹⁾.

<제45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기관 및 감면율 연혁>

구분	2018~2023년	현행	황정아III의원안
대상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행과 같음)
	② 기초과학연구원	② 기초과학연구원	
		③ 국방과학연구소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한국국방연구원	
		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100%	취득세·재산세 50%	취득세·재산세 60%

이에 개정안은 각 연구기관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 국가 정책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48) 2017. 12. 26. 신설

49) 2023. 12. 29. 일부개정

<황정아Ⅲ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황정아Ⅲ의원안
기초과학연구기관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45의2)	감면 대상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행과 같음)
		② 국방과학연구소	
		③ 기초과학연구원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한국국방연구원	
		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면 대상	연구기관이 직접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	취득세 60% 재산세 60%
	일몰 기한	~2026년	~2031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성, 타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해당 연구기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여부⁵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75억 1,000만원이며, 재산세 감면액은 약 60억 5,000만원임.

50)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감면대상 연구기관 47개 중 17개 기관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14개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해 있음.

<최근 3년간 기초과학연구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45조의2)>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54	15,900,283	207	5,752,309
2022	85	2,441,993	215	6,659,827
2023	108	4,211,509	225	5,758,924

※ 자료 :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황정아Ⅲ의원안에 따라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인상하는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2031년 6년간 총 573억원(연평균 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⁵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기초과학 연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감면율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기초과학분야 공공기관 감면율을 축소(100%→50%)하는 대신 감면대상 기관을 확대(22개→49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5. 1. 21.)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감면대상 기관 현황

구분	하위 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 (총 19개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총 24개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환경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황정아Ⅱ의원안 제46조)

개정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이 기업부설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면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황정아Ⅱ의원안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u>100분의 35</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u>100분의 50</u>]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u>100분의 35</u>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50</u>)를 각각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 ----- ----- ----- <u>100분의 45</u> ----- ----- ----- ----- ----- ----- <u>100</u> ----- <u>분의 60</u> ----- ----- ----- <u>100분의 45</u> ----- ----- ----- <u>100분의 60</u> ----- <u>-2030년 12월 31일</u>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 -----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⁵²⁾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100분의 45-----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60-----2030년 12월 31일-----.

③ -----

-----100분의 60-----

-----100분의 75-----

-----100분의 60-----

-----100분의 75-----2030년 12월 31일-----.

④ -----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u>100분의 60</u>(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75</u>)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u>100분의 50</u>(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u>100분의 65</u>)을 각각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⑤ (생략)	----- ----- -----<u>100분의 70</u>----- ----- -----<u>100분의 85</u>----- ----- -----<u>100분의 60</u>----- ----- -----<u>100분의 75</u>-----<u>2030년 12월 31일</u>-----.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46조는 중견기업⁵³⁾(제1항), 과밀억제권역⁵⁴⁾ 밖에 위치한 대

5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수정 필요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가 동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규정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른바 “대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제4항이 별도로 중소기업에 대해 규정함에 따라 동법 제46조제1항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업⁵⁵⁾(제2항), 초기중견기업⁵⁶⁾(제3항) 및 중소기업⁵⁷⁾(제4항) 등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56)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27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 제19936호)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5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⁵⁸⁾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율을 각각 15%p 상향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견기업 등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일괄적으로 10%p 상향하면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황정아 I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황정아 II 의원안
연구개발 자원을 위한 감면 (§46)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현행과 같음)
	감 면 내 용	대기업(②) (과밀억제권역 外)	취득세 35% 재산세 35%
		중견기업(①)	취득세 45% 재산세 45%
		초기중견기업(③)	취득세 50% 재산세 50%
		중소기업(④)	취득세 60% 재산세 50%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각 감면율에 15%p 추가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2025년	~2030년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려는 취지로, 최근 경기침체,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58) ① 미래형자동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④ 콘텐츠, ⑤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헬스, 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 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소재·부품·장비, ⑬ 탄소중립, ⑭ 방위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7])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및 국가 경쟁력 향상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여부, 기업 규모를 고려한 감면규모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99억 6,000만원이며,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은 약 64억원임.

<최근 3년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제46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11	8,747,356	8,130	6,159,209
2022	378	10,312,581	8,691	6,768,034
2023	394	10,894,304	9,074	6,321,005

※ 자료 :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은 2025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부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9.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윤재옥의원안 제70조의2)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라 함)가 터미널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윤재옥의원안
<신설>	<u>제70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u> <u>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

	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70조는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1항), 천연가스 버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항),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4항)을 그 내용으로 함.⁵⁹⁾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외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⁶⁰⁾ 설치 관련 인가받은 공사계획⁶¹⁾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공사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6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재옥의원안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동산 감면 (\$70의2 신설)	감면 대상자	<신 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감면 대상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공사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내용		① 취득세 25% ② 재산세 25%
	추징 규정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몰 기한		~2028년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여객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가 감소하였는바, 2022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2024년 매표수입금은 2019년 대비 22.2% 정도 감소한 상황임.⁶²⁾⁶³⁾

62) 여객터미널사업자의 수입은 여객 대상 승차권 판매에 따른 위탁 판매 수수료 및 상가 임대료로 구성됨.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와 관련하여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연도별 터미널 이용객 수 및 매표수입금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객 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2019년	165,332,756	171,997,384,565
2020년	87,675,211	88,690,660,258
2021년	78,242,547	79,800,868,854
2022년	91,452,740	99,192,401,132
2023년	99,849,186	120,424,974,241
2024년	100,619,664	133,923,901,716

※ 자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이에 지방세 감면특례를 신설할 경우 여객터미널사업자의 세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객터미널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는 “대중교통시설”⁶⁴⁾로서,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시외접근권을 위한 공공성을 띠고 있음. 경영악화 등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폐업하는 경우,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 이용자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임.

6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이후 여객수요 및 매표수입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여객터미널은 전국 42개소('25.1 기준)로 집계되고 있으며, 폐업 또는 매표업무를 중단한 터미널의 수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많음을 알 수 있음⁶⁵⁾).

즉, 지방 대중교통의 핵심거점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지역 간 및 지역 내의 이동을 촉진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 경영악화로 폐업한 터미널의 상당수를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세 법령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서 토지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⁶⁶⁾

65)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후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66)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각 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마. 생략)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토지의 분류에 따른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0~5,000만	0.2%	0.2%	0.2%
5,000만~1억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2억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2억~10억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자료: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바탕으로 작성

*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0.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4%) 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 0.2%~0.5%)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한계세율 0.2%~0.4%)에 비해 재산세가 저율(0.2%)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이미 다른 토지에 비해 재산세 부담을 경감받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⁶⁷⁾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67)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또는 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⁶⁸⁾⁶⁹⁾

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69)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경우 버스터미널 사업자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5년 운영비 지원금으로 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를 종합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경영 안정 도모 필요성과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성, 이미 저율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재옥의원안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 시 지방세수는 2025년~2028년간 총 280.2억원(연평균 70.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⁷⁰⁾.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점, 현재 시·도가 자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지방비 보조 및 융자 지원이 가능한 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간 규모·여건 등이 상이하여 법정 감면보다 조례를 통한 지역별 지원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2. 31.)

참고

연도별 폐업 여객터미널 현황

<연도별 폐업 여객터미널 개수>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터미널수	5개	5개	5개	7개	7개	6개	5개	2개	42개

※ 자료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연도별 폐업 여객터미널 목록 및 현재상황>

연 도	터미널 명 칭	지 역		폐업 사유	현재 상황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2017년 (5개)	기 름	강 원	인제군	시외노선 중단에 따른 경영악화	폐 쇄
	고금, 원동	전 남	완도군		폐 쇄
	건천, 아화	경 북	경주시		폐 쇄
2018년 (5개)	금 왕	충 북	음성군	수요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및 운송수입금 지급 지연으로 버스업체 운행거부	정류소 축소 운영
	장항, 서천	충 남	서천군	수요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폐 쇄
	강 진	전 남	강진군	수요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지자체 공영화
2019년 (5개)	장호원	경 기	이천시	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 취소	지자체 공영화(24년)
	염 산	전 남	영광군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중단에 따른 경영악화	폐 쇄
	좌 일		해남군		폐 쇄
	주왕산	경 북	청송군		시내버스 정류소 운영
	영 산	경 남	창녕군		폐 쇄
2020년 (7개)	영 동	충 북	영동군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정류소 축소 운영
	광 양	전 남	광양시	버스업체와 극한 대립과 지자체 행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면허취소	
	곡 성		곡성군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지자체 임시운영
	석 곡				지자체 공영화
	성 주	경 북	성주군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중단에 따른 경영악화	폐 쇄 (시내버스 정류소)
	청 도		청도군		폐 쇄 (시내버스 정류소)
	기 성		울진군		정류소 축소 운영

연 도	터미널 명 칭	지 역		폐업 사유	현재 상황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2021년 (7개)	운 천	경 기	포천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수요 급감에 따른 경영악화	폐 쇄
	원주고속	강 원	원주시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시외터미널 통합
	녹 동	전 남	고흥군		지 자체 공영화
	고 흥				지 자체 임시운영
	신 북		영암군		지 자체 공영화
	영 암				지 자체 공영화
	매 화	경 북	울진군		폐 쇄 (시내버스 정류소)
2022년 (6개)	성 남	경 기	성남시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정류소 임시운영
	대 화	강 원	평창군		지 자체 임시운영
	원 평	전 북	김제시		지 자체 차고지 조성
	남원고속		남원시		시외터미널 통합
	익산고속		익산시		시외터미널 통합
	도 암	전 남	강진군		폐 쇄
2023년 (5개)	상 봉	서울 특별시	종량구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주상복합 개발 (정류소 축소)
	화 정	경 기	고양시		폐 쇄
	진 부	강 원	평창군	부지소유주와 마찰 갈등에 따른 명도소송 패소	임시운영 (지자체임차)
	벌 교	전 남	보성군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지 자체 임시운영
	영 천	경 북	영천시		지 자체 공영화
2024년 (2개)	송 탄	경 기	평택시	수요 감소 및 시외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	정류소 축소 운영
	도리원	경 북	의성군		폐 쇄

※ 자료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10.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송재봉의원안 제116조의2 신설)

개정안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첨단산업인재(이하 “첨단산업인재”라 함)⁷¹⁾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하 “첨단산업기업”이라 함)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현 행	송재봉의원안
<신 설>	제116조의2(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인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그 첨단산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해당 첨단산업인재가 대통

7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수도권 밖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취업하거나 해당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

	<u>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⁷²⁾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⁷³⁾으로 2024.1.16. 제정되어 2025.1.17. 시행되었음.

7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개정안은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도권 지역 외 소재한 첨단산업기업의 인재양성 및 채용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송재봉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윤재옥의원안
첨단산업인재의 첨단산업사업장 취업시 감면 (§116의2 신설)	감면 대상자	<신 설>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한 첨단산업인재
	감면 대상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
	감면 내용		개인지방소득세의 70%

현재 산업분야 인재 채용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한 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송재봉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⁷⁴⁾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별도의 개인지

7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4) 「조세특례제한법」에 제63조의4를 신설하여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

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도입할 실익이 적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67조의2⁷⁵⁾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3장(지방소득세 특례)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송재봉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려는 내용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966)

제63조의4(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첨단산업기업”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수도권 밖의 사업장(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첨단산업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첨단산업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첨단산업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의3 또는 제30조에 따른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75)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법률안」은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한 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인바 개정안 심사 시 해당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를 공제·감면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 개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 개정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